



EU, 에코디자인 규정 (ESPR) 발효

- 제품군 별 세부 규제는 추후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 -

EU의 새로운 에코디자인 규정(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ESPR)은 기존의 에코디자인 지침(2009/125/EC)을 보다 강화한 것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EU 역내에 출시되는 모든 제품을 EU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의 에코디자인 지침이 가전제품 등 에너지 소비 및 에너지 관련 제품에만 적용되었고 주로 에너지 효율성에 중점을 두었던 것에 비해, 새로운 규정은 그 범위를 크게 확장했습니다. 제품의 전체 생애주기에 걸친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며, 내구성, 재사용성, 재활용 가능성, 수리 가능성, 유지보수의 용이성 등이 새로운 에코디자인 요건으로 추가되었습니다.

1. 에코디자인 규정의 등장 배경
2. 에코디자인 규정의 주요 내용
3. 시사점

1. 에코디자인 규정의 등장 배경

EU는 2019년 신성장전략으로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했습니다. 유럽 그린딜은 2050년까지 EU 전역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 하에 에너지, 산업, 금융, 농업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변화를 목표로 합니다. EU는 2020년 그린딜의 핵심 전략으로 '순환경제실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자원의 효율적인 순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순환경제는 기존의 '채취-생산-폐기'로 이어지는 일방향적 경제 모델에서 탈피하여, 제품의 전 생애주기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EU는 2022년 3월, 기존의 에코디자인 지침을 한층 발전시킨 '에코디자인 규정'을 새롭게 제정했습니다. 이 규정은 제품의 전체 수명주기에 걸쳐 에너지 효율성 향상은 물론, 환경 보호와 순환경제 촉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제품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EU는 보다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속가능성 정책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에코디자인 규정의 주요 내용

(1) 적용범위

에코디자인 규정은 부품 및 중간 제품을 포함하여 EU 시장에 출시되거나 서비스에 투입되는 모든 물리적 상품(physical goods)에 적용됩니다. 기존 지침은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제품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에코디자인 규정은 모든 물리적 품목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적용 대상에는 부품과 중간재, 디지털 콘텐츠 등이 포함되며, 식품과 사료, 인체용 의약품, 차량 및 국가안보 관련 품목은 제외됩니다.

(2) 에코 디자인 요구사항(Ecodesign requirements, 제2장)

EU 집행위원회는 제품군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요소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에코디자인 요건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내구성(durability), 신뢰성(reliability), 재사용성(reusability), 업그레이드 가능성(upgradability), 수리 가능성(repairability), 유지보수 및 개조 가능성(possibility of maintenance and refurbishment), 유해물질의 함유량(presence of substances of concern), 에너지 사용 및 에너지 효율성(energy use and energy efficiency), 물 사용 및 효율성(water use and water efficiency), 자원 사용 및 자원 효율성(resource use and resource efficiency), 재활용 소재 활용(recycled content), 재제조 가능성(possibility of remanufacturing), 재활용 가능성(recyclability), 재료 회수 가능성(possibility of the recovery of materials), 탄소 발자국 및 환경 발자국을 포함한 환경 영향(environmental impacts, including carbon footprint and environmental footprint), 예상 폐기물 발생량(expected generation of waste)

에코디자인 요구사항은 제6조에 명시된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s) 및 제7조에 따른 정보 요구사항(information requirements)을 포함해야 하며,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용자의 관점에서 제품 기능성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없어야 함
- 개인의 건강과 안전에 부작용이 없어야 함
- 중고 제품에 대한 접근성, 내구성 및 제품의 수명 주기 비용도 고려하여, 관련 제품의 가격 적정성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없어야 함
- 중소기업 등 경제 운영자와 가치 사슬의 다른 행위자의 경쟁력에 불균형한 부정적 영향이 없어야 함
- 제조업체나 가치 사슬의 다른 행위자에게 독점 기술을 강요해서는 안 됨
- 중소기업 등 제조업체나 가치 사슬의 다른 행위자에게 불균형한 행정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됨

또한 제품은 위임 법률에 따른 성능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정보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제3장에 따른 디지털 제품 여권과 관련된 요구사항 및 제5항에 따른 우려 물질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3) 디지털 제품 여권(DPP, Digital Product Passport, 제3장)

DPP는 제품의 전체 수명 주기에 걸쳐 중요한 정보를 디지털 형식으로 제공하는 수단을 말합니다. DPP에는 제품의 식별 정보, 에코디자인 요건 정보(내구성, 수리 가능성, 재활용 가능성 등), 소재, 공급망 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QR 코드나 워터마크 등의 데이터 이동 매체(data carrier)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제품은 DPP가 제공되는 경우에만 시장에 출시될 수 있으며, 디지털 제품 여권의 정보는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 상태여야 합니다.

DPP의 세부 사항은 향후 제품 군별로 제정될 위임법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위임법에서는 DPP가 적용될 제품군, 포함되어야 할 정보의 범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주체, 그리고 DPP의 유효 기간 등이 상세히 규정될 것입니다. 우선 적용 대상으로 선정된 제품군에 대한 첫 번째 DPP는 2027년 중반 무렵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미판매 제품 폐기 규제(Destruction of Unsold Consumer Products, 제6장)

먼저, 기업들은 미판매 제품을 폐기할 경우 폐기된 제품의 수량과 무게, 폐기 사유, 처리 방식, 그리고 폐기를 방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 등 관련 정보를 기업의 웹사이트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의류, 모자, 의류 부자재 및 신발(부속서 7A)의 폐기는 원천적으로 금지됩니다. 미판매 제품 보고 및 폐기 금지 의무는 발효 24개월 후부터 시행되며, 중견기업(medium-sized)은 발효 6년 후부터 적용되고, 중소기업(micro and small)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EU 집행위원회는 일부 예외 사항을 고려하고 있으며, 규정 발효 후 1년 이내에 세부적인 위임법령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안전상의 이유, 수리 불가능한 손상, 재사용이나 재제조를 위한 폐기,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판매 불가능 등의 경우에는 의무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시사점

개정된 에코디자인 규정은 모든 물리적 품목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 시장에 진출했거나 향후 진출을 계획하는 국내 기업들은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에코디자인 규정과 품목별 이행 규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품을 제조 및 출시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들은 에코디자인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유해물질 함유량, 탄소 발자국, 재생 가능 소재 사용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에코디자인 요구사항을 포함한 제품의 전 주기 관련 정보가 담긴 디지털 제품 여권 체계에 사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5년 5월경에 우선순위 품목군 설정 등을 포함한 첫 번째 실무 계획(Working Plan)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섬유와 철강이 첫 번째 품목별 이행 규정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으며, 관련 이행 규정은 2027년 중순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선 적용 품목으로 명시된 업종의 사업자들은 하위 규정의 제정 동향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우의 ESG센터는 막연한 ESG 업무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s

신승국

T. (+82) 2 6182 8502

센터장/미국변호사 E. synn@yoonyang.com

이광욱

T. (+82) 2 6003 7535

파트너변호사 E. kwlee@yoonyang.com

이근우

T. (+82) 2 6003 7558

파트너변호사 E. klee@yoonyang.com

유현상

T. (+82) 2 6182 8716

변호사 E. hsryu@yoonyang.com

양희

T. (+82) 2 6003 7674

시니어매니저 E. hyang@yoonyang.com

김현지

T. (+82) 2 6003 7470

시니어컨설턴트 E. khji@yoonyang.com